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 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영홍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4. .

발 의 자 : 조영홍·안병배 의원  
(찬성자 5 인)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 함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(1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4조
- (2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24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(2) 규제심사 :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1조제9호”를 “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통안전시설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<u>영 제11조제9호</u>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</u>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6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<u>영 제24조제1항제2호</u>카목----- -----.</p> <p>1. <u>교통안전시설물</u>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</li> </ul> </li>  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)</li> </ul> </li> </ul>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취사항

## 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제4조(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)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공중보건,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3.29]

## 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)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.

### 1.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·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·도지사가 시·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

다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

라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

- 마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
- 바.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림보호구역
- 사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
- 아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
- 자. 관공서·학교·도서관·박물관,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, 공회당·사찰·교회 및 그 부속시설
- 차. 화장장·장례식장 및 묘지
- 카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·일반국도·지방도·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·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. 다만,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,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- 타. 다리·축대·육교·터널·고가도로 및 삭도(索道)

## 2.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

- 가. 도로표지·교통안전표지·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
- 나. 전봇대
- 다. 가로등기둥[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(懸垂旗)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- 라. 가로수
- 마. 동상 및 기념비
- 바. 발전소·변전소·송신탑·송전탑·가스탱크·유류탱크 및 수도탱크
- 사. 우편함·소화전 및 화재경보기
- 아. 전망대 및 전망탑
- 자. 담장(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)
- 차. 재배 중인 농작물
- 카.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

[전문개정 2011.10.10]

[제10조에서 이동 <2011.10.10>]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2호  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이 없음

## 4. 작성자

산업위원회 조영홍 의원